

# 이럴 때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 • 언제 신고하나요?

-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 •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강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신체학대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소영이의 몸에는 멍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알코올중독인 아버지의 폭력은 엄마 뿐 아니라 소영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끔찍한 폭력 속에서 10살 소영이의 몸과 마음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휘두른 폭력에 소영이는 정신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 갔고, 병원에서 몸 이곳저곳에 난 상처를 이상히 여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으로 아버지는 병원에 강제입원조치 되었고 소영이는 그룹홈에서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신체학대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행위를 말합니다.

- ▶ 뺨을 때리거나 떠밀고 움켜잡음
- ▶ 물건을 던짐
- ▶ 전기충격
-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쳤음
- ▶ 할퀴거나 반복적으로 꼬집음
- ▶ 물에 빠뜨림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정서학대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진육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진육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진육이에게 특하면 화를 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날부터인가 진육이는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욕을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장난감을 던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엄마의 잘못된 양육태도로 진육이의 인성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육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놀이치료를 받고 있고 어머니는 올바른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사랑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 욕설을 퍼붓거나 잠을 재우지 않음
-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무시 또는 모욕
- ▶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함
- ▶ 비현실적 기대로 아동을 괴롭힘
-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음
- ▶ 별거벗겨 내쫓음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방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 물리적 방임

-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 ▶ 불결한 주거환경에 방치
- ▶ 아동의 출생신고 하지 않음
- ▶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함
-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리짐
- ▶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 • 교육적 방임

- ▶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에 무관심
- ▶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음
- ▶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함

## • 의료적 방임

-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지를 하지 않음
- ▶ 예방 접종이 필요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음
- ▶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성학대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어린이집에서 소변을 보다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7살 유미를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만나서 상담한 결과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유미의 몸을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유미를 분리하였고, 산부인과 진료와 정신과 진료를 통해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 ▶ 성기삽입 및 성적접촉
- ▶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보여줌
- ▶ 아동매춘이나 매매
-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감
-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지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대는  
계속 대물림됩니다.



결혼선



결혼선



**학대의 대물림, 당신의 신고로 끊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남의 집안일’이라며  
지나치는 당신도 가해자입니다

아동학대의 80%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아동학대 신고번호 | 112

‘아이들을 구할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고만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